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83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 박수영 · 권영세 · 김성원

김용판 · 김태호 · 김희곤

서병수・송석준・유경준

이 용・태영호・허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보증을"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같은 법 제43조의11에 따른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신탁등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을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 |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 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 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 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 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같은 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 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법 제43조의11에 따른 주택 또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 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담보 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 신탁등기-----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1. -----제4조에 따른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 시가표준액-----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 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생	략)
Δ.	(/と)	4)

②·③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